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제주의 국제학교를 포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주 소재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3. (생략)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u><신설></u> <u><신설></u> 3.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1의3. (현행과 같음) 2.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그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¹⁾는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²⁾, 대안학교³⁾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를 두지 않는 대안교육기관 등은 포함되지 않음.

한편, 국내에서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은 크게 ‘외국교육기관’⁴⁾과 ‘제주 소재 국제학교’로 나누어볼 수 있음. ① 외국

1)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⁵⁾으로,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인천과 대구의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⁶⁾,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② 제주의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⁷⁾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어교육도시에 현재 4개교⁸⁾가 존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3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학교로⁹⁾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채드워스국제학교(인천),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한국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브랜섬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9) **제주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 교육기관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 >

구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	법적 근거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 국제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러나 제주의 국제학교 역시 졸업 시 대한민국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고¹⁰⁾, 4개교 모두 내국인 재학생 비율이 90%를 넘는 등 재학생 수의 대부분이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¹¹⁾

<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별 내국인 재학생 비율 >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재학생 수	내국인 재학생 수	전체 재학생 수	내국인 재학생 비율
한국 국제학교	31	1,020	1,051	97.1
노스런던컬리지 에잇스쿨제주	127	1,292	1,419	91.1
브랜섬홀 아시아	93	1,116	1,209	92.3
세인트존스 베리아카데미	103	1,086	1,189	91.3

자료: 교육부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0) 제주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11) 교육부,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에 개정안은 제주의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개인이 「민법」 제755조¹²⁾에 따른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 즉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법」,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함.

또한,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22년 1.7% → '23년 1.9% → '24년 2.1%)를 고려할 때 제주의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제도를 적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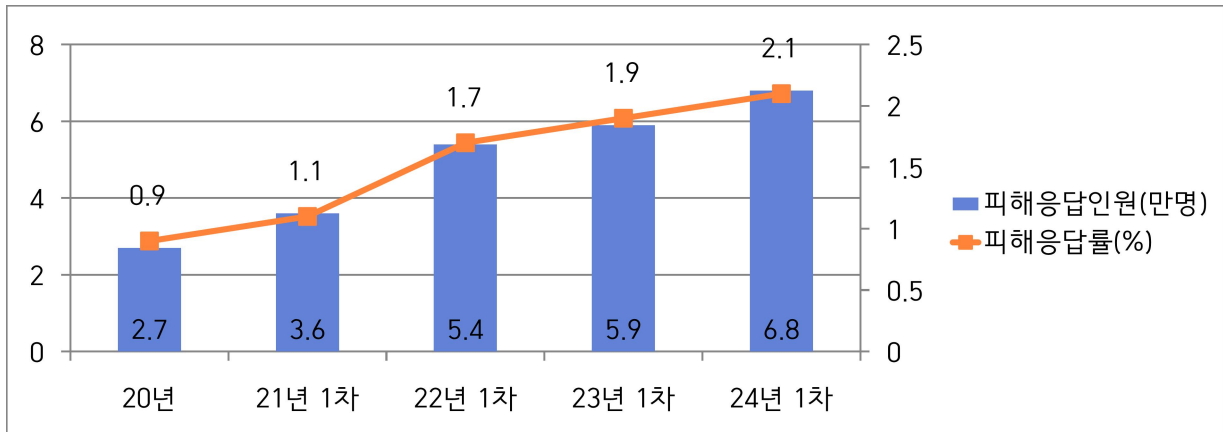
2024.9.25.

12)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최근 5개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¹³⁾

다만, 제주의 국제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조치 등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제주의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¹⁴⁾, ‘국제학력기구 기준’에 부합한 학생의 안전과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이미 제정·운영 중이며,

이들 규정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내 봉사, 정학, 퇴학 조치나 교직원 중재 하의 회복적 접근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교육부,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9.25.

14) 제주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규정 >

학교명	규정 명칭
KIS (한국국제학교)	- School and Dorm Life Guide (학교 및 기숙사 생활 지침)
NLCS Jeju (노스런던 컬리지 에잇스쿨 제주)	- Anti-Bullying Policy (반-집단따돌림 정책) - Student code of conduct and Rules of the school (교내학생행동강령) -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olicy (정신건강 복지 정책) -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
BHA (브랜섬홀 아시아)	- Anti-Bullying Response Procedures (반-집단따돌림 대응절차)
SJA Jeju (세인트존스 베리아카데미 제주)	- SJA Jeju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 Parent Handbook (학생-학부모 핸드북)

자료: 교육부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주의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¹⁵⁾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이 상이하므로, 제주 국제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교육청: 신중검토 - 제주 국제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적용받지 않아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퇴학 조치의 경우 강제이행, 피해학생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인 초·중·고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8

- 학교폭력예방법을 국제학교에 적용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교육감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부족함.

○ **제주 국제학교: 신중검토**

-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국제학교(NLCS, SJA, Jeju, BHA)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관련 규정과 중복되므로 제주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국제학교에서 적용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규정은 엄격한 수준이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 및 협약과 일치함.
- 제주 국제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이 수학하고 있고, 국제학력기구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 중 가해 학생 전학, 학급교체 처분 등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교육기관법」상 외국교육기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문 의 처

02)6788-5184